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7.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42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2.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7. 13.)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3조)
 - 강남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제정 조례안, 별첨
 - 2) 입법예고(2021.5.14. ~ 2021.6.3.) 결과, 내부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 수정(※재입법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사회는 4차산업혁명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서는 사회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8.6. 제정하였음. ‘적극행정’¹⁾의 주요내용은 첫째, 적극행정의 보호제도로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제도가 있음. 사전컨설팅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규정”) 제5조2)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감사기구 장에게 해당 업무에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면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전컨설팅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를 면책³⁾시키는 제도임. 의견제시는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규정 제16조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임. 둘째, 적극행정 지원 제도로 소송발생⁵⁾ 시 규정 기소 전

3)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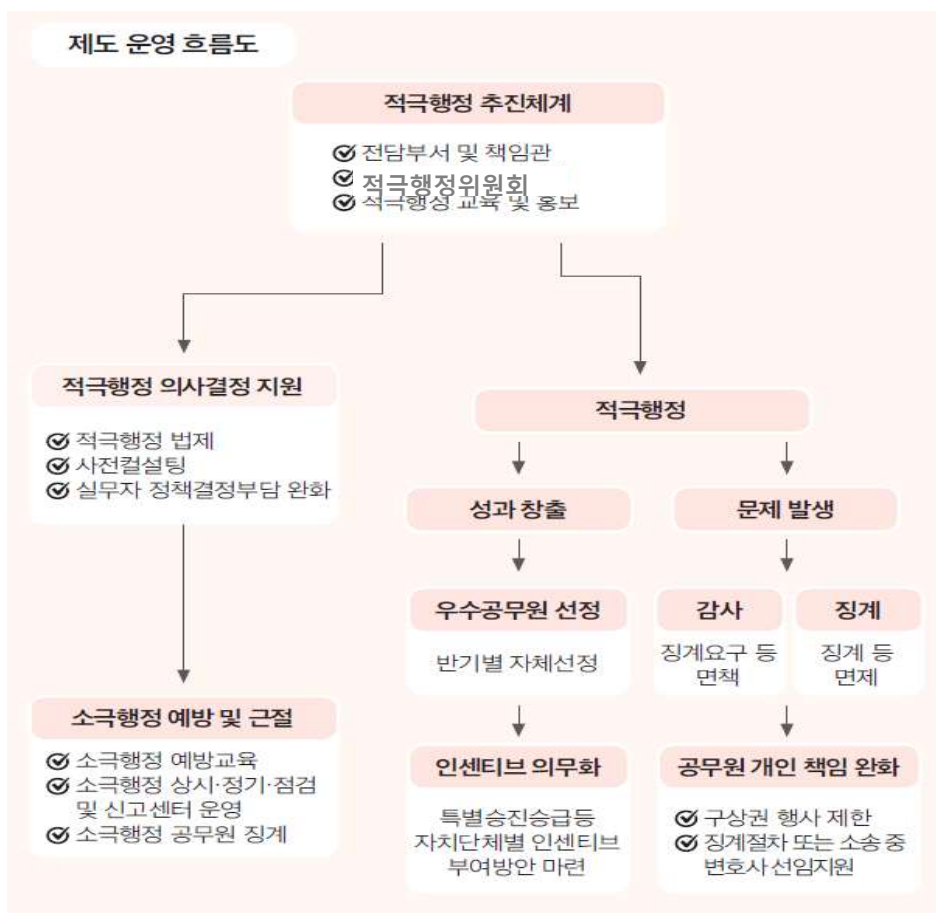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지원하고 소송 수행 시에는 규정 제 17조제3항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등)하는 제도임. 셋째, 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로 ①특별승진임용, ② 특별승급, ③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④특별휴가, ⑤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⑥승진가점, ⑦희망부서 전보, ⑧교육훈련 우선선발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는 것임. 다만, 규정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의 일부를 제7조, 제10조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제도 운영 흐름도는 다음 표와 같음.



-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제19조⁶⁾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

제19조(적극행정 면책)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 요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7)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행정규칙의 하나인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규정”) 제7조제1항8)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안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서는 규정 제10조제2항9)에 따라

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8)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강남구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강남구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사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10)의 위원회 기능에도 부합하다고 보여짐. 다만,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끝.